

어음의 회계처리

상담실 백종훈 차장

어음이란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특정한 장소 및 날짜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한 유가증권으로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발행자가 수취인에게 약정한 기일과 장소에서 일정금액을 지급기로 약속한 약속어음이다.

이렇게 어음이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어음 자체가 대금의 결제에 대한 보증력이 강하면서도 결제일 이전에도 할인 또는 배서양도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의 회계처리

어음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음거래의 결과로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것인지 또는 원자재나 상품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어음의 계정 및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되므로 어음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통상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는 ‘받을어음’(또는 매출채권)계정의 차변에 기재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는 ‘지급어음’(또는 매입채무)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 제품을 납품하고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차)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10,000	대) 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 원자재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차) 원자재	100,000	대) 지급어음(또는 매입채무)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시의 회계처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어음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데 이를 배서라고 한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만기일전에 상품매입대금이나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바,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받을어음(또는 매출채권)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 회계처리 한다.

❖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현금	100,000	대)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00,000
-------	---------	-------------------	---------

또한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만기일 전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고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즉, 어음할인이란 어음의 만기금액을 할인받은 시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할인으로 인하여 수취할 금액은 어음의 만기금액에서 할인받은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어음할인에 따른 차감되는 할인료는 그 성격이 어음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 등에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라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통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개념보다는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 어음할인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	99,000	대)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		